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3. 22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3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(97.5.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담당관 유진생)

가. 제안이유

- 98. 3. 1일자로 행정법원이 개소됨에 따라 인천법원 인근 행정소송대리인(변호사)의 신규임용 필요
 - 현행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임의적전치주의로 변경됨
-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과년도 진행중인 사건 등으로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한계
- 소송가액의 고액화 및 사건내용이 고도로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변론자료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

나. 주요골자

- 고문변호사 증원(안 제2조제1항)
 - 현행 : 2명(행정소송 1, 민사소송 1)

- 개정 : 6명(행정소송 3, 민사소송 3)
- 고문변호사의 2분의 1은 의회에서 추천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고문변호사 증원이 꼭 필요합니까?	○ 소송사건 내용이 고도화, 전문화, 다양화되어 변론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97년에는 추가로 2명만 더 위촉하고 쟁송사건 발생 정도에 따라 추가위촉하고자 합니다.
○ 기존의 고문변호사가 일이 많아 불만 있는 것 아닙니까?	○ 그렇지 않습니다.
○ 변호의 질이 낮아서 증원하는 것입니까?	○ 그렇지 않습니다. 다수의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변호사 선택의 폭이 넓어져 양질의 변호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
○ 현재의 필요적 행정전치주의에서 임의적전치주의로 바뀌면 행정소송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?	○ 행정심판을 거치는 단계를 생략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.

4. 토론여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증개정조례안수정안

의안번호	제236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5. 6.
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임의적행정심판전치주의로 변경되어 쟁송사건이 증가된다 해도 현행 2인의 고문변호사를 4인 증원하여 6인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증원이며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판단되어 인원을 축소 조정하였음.

2. 주요골자

- 안 제2조제1항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"6인 이내"를 "4인 이내"로 수정함.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증개정조례안수정안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제1호 "6인 이내의"를 "4인 이내의"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 2 조(위촉 및 해촉) ①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<u>2인 이내의</u>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단, 고문변호사 2분의 1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</p> <p>..... <u>6인 이내의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</p> <p>..... <u>4인 이내의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~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인 이내의”를 “4인 이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